

## 『상호부금』 특약

### 제1조 부금의 입금

- ① 거래처는 계약기간 동안 매월 약정한 날짜에 월저축금을 입금해야한다. 다만, 자유적립식 예금일 때는 저축금을 달리하여 수시로 입금할 수 있다.
- ② 부금의 1회 적립부금은 최저 1만원 이상이며 자유적립식 상호부금의 경우에는 계약기간의 3분의 2가 지난 때에는 이미 적립한 저축금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.
- ③ 자유적립식 상호부금의 추가 적립시 1회 불입한도는 1,000만원이내로 한다.

### 제2조 특별이자

거래처가 관련 대출을 받지 않은 경우 은행은 계약일 당시의 영업점에 게시한 특별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계약금액에 더하여 지급한다.

### 제3조 계약기간내 대출

- ① 거래처는 입금횟수의 3분의 1 이상을 지연없이(입금 횟수를 정하지 않은 자유적립식 상호부금은 계약기간의 3분의 1 이상 지나고 월 1회 이상) 입금했을 때, 또는 은행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전이라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.
- ② 대출금액은 계약금액에서 상호부금 해지액을 뺀 금액내로 한다. 다만, 계약금액을 정하지 않은 자유적립식 상호부금일 때는 월평균입금금액에 계약월수를 곱한 금액에서 상호부금 해지액을 뺀 금액내로 한다.
- ③ 제②항에 따라 상호부금을 해지할 때는 적립식 예금약관 제7조 제③항에 따라 처리한다.